

남광토건

안전 인사이드

NAMKWANG Safety Insight



남광토건은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 구성원의 안전확보와 생명존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 | |
|----------------|----------------|
| 1. 안전경영방침 | 6. 작업중지권 |
| 2. 안전경영인증서 | 7. 안전감시단 |
| 3. 안전보건관리 핵심요소 | 8. 기술안전관리 |
| 4. 3대 핵심 안전조치 | 9. 의사소통 |
| 5. 작업허가제 | 10.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안전경영방침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전 임직원은 안전보건을 경영의사 결정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임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확보를 위한 무재해사업장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립을 통해 ‘안전보건역량강화’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경영방침을 정하여 실천한다.

Safety First 기업 안전문화 구축

안전경영을 통한
회사의 사회적 책임 준수

안전 확보 후
작업을 개시 하는 원칙준수

3대 재해예방[추락, 협착, 낙하/비래]
핵심조치 이행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안전경영방침의 실현을 위하여 각 조직 및 계층에서 법과 책임을 준수하는 안전경영목표를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이행 확인을 통해 안전경영체계가 지속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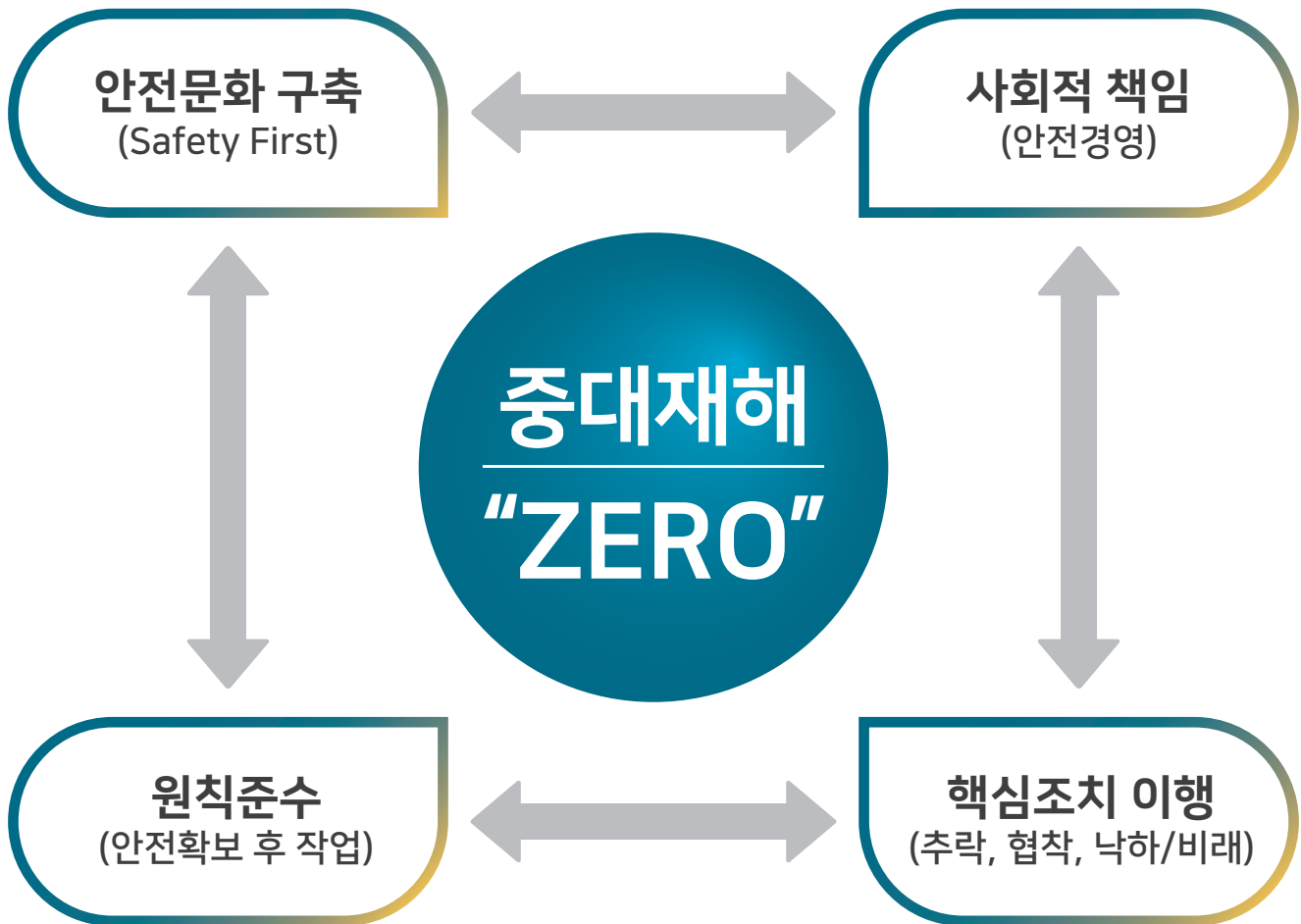
남광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민 규

(인)

안전경영방침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남광토건



안전보건문화를 선도하는 남광토건

안전경영인증서

직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3자가 국제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 인증서

국제인정협력기구(AF)의 상호인정협정에 의한 인증서입니다



KAB-OC-06

인증서번호 : KOHS-020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남광토건(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안로 120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위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술된 인증표준과 범위에 적합함을 인증함.

인증표준

KS Q ISO 45001:2018 / ISO45001:2018

인증범위

-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전기, 통신 및 소방의 설계,
개발, 엔지니어링, 시공, 유지보수 및 건설사업관리
- 철구조물의 설계, 구매, 조립, 검사, 시험, 설치 및 부가서비스

최초인증일자 : 2008년 11월 16일 인증유효기간 : 2020년 11월 17일 ~ 2023년 11월 16일

- * 본 인증서는 위 조직이 인증유지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인증효력의 유효성은 웹사이트 www.kpcq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자 : 2021년 09월 10일

심영녕

심사팀장

정위식

원장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2F
www.kpcqa.or.kr / Tel.02-738-900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한국인정지원센터(KAB)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 : KAB-OC-06) 받았습니니다.

for OH&SMS



CATE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Co., Ltd.

gin-si, Gyeonggi-do, Korea

ssurance certifies that
system of the above organization
be in accordance
the standards
etailed below.

O45001:2018

on
ction, maintenance and
ural, housing, plant, electrical,
re fighting works
n & test, installation and

: November 17, 2020 ~ November 16, 2023

- *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if the organization meets the requirement continually
- * Certification Validity information is available at www.kpcqa.or.kr

Date of Issue : September 10, 2021

심영녕

Sung-Nyoung, Im
Lead Auditor

정위식

Eui-Sik, Jeong
CEO

kpc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12F, KCCI building, 39, Sejong-daero, Jung-gu, Seoul, Korea
www.kpcqa.or.kr / Tel.82-2-738-9001

The use of Accreditation Mark KAB indicates Accreditation in respect of those activities covered by the Accreditation Certificate Number KAB-OC-06

안전보건관리 핵심요소

1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 (인력, 시설, 장비)을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2

근로자 참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

위험요인 파악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지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위험작업을 파악합니다.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6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사업장 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사업장 내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대 핵심 안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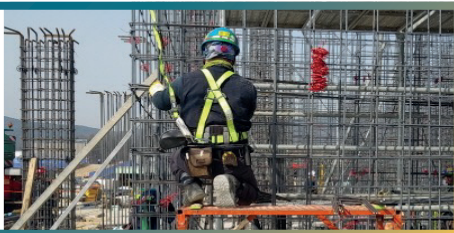
1. 추락재해예방

추락위험구간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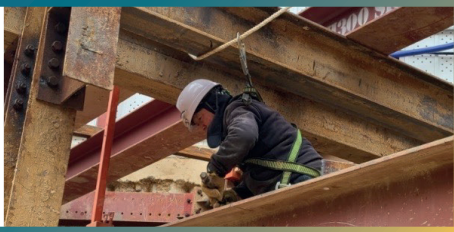
막고!!!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벨트 등)
지급/착용



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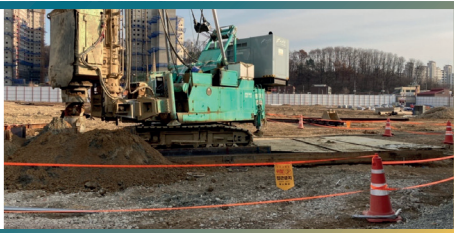
2M 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용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안전대 고리 체결



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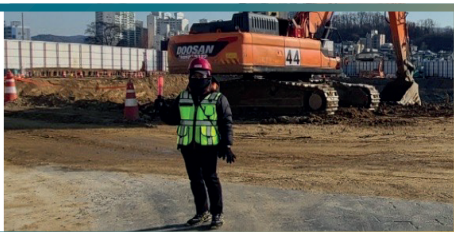
2. 장비협착재해예방

건설기계 작업구간
접근방지 구획 설치
(웨빙띠, 가설헨스 등)



막고!!!

건설기계
유도원(신호수) 배치



보고!!!

건설기계 안전장치 설치
(협착방지봉, 경광등,
후방카메라 등)



달고!!!

3. 낙하/비래재해 예방

낙하위험 구간
접근금지 구획설치
(웨빙띠, 라바콘 등)



막고!!!

중량물 양중시
신호수 배치하여
신호 및 하부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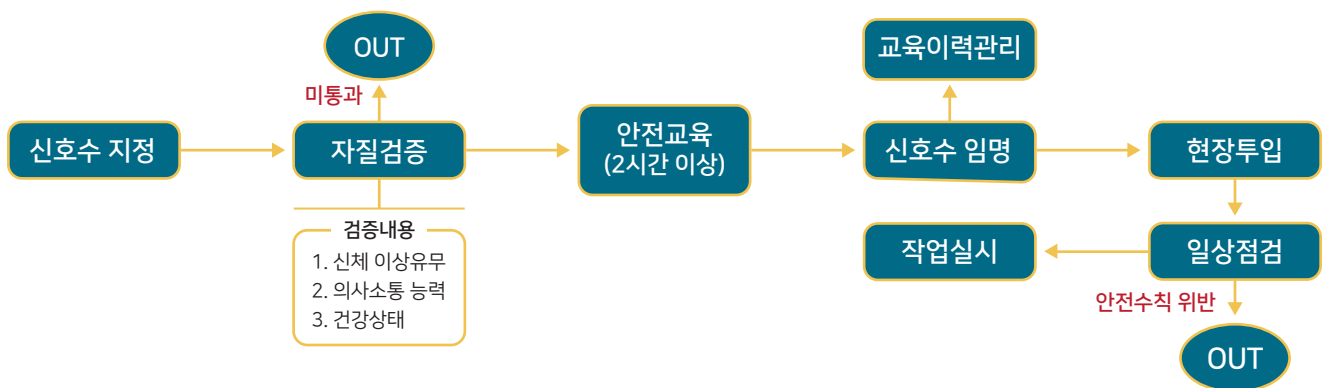
보고!!!

낙하물 위험구역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등
안전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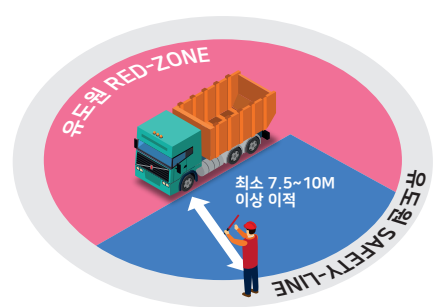
치고!!!

신호수(유도원) 배치 안전관리



신호수(유도원) 복장 및 신호위치

복 장	신호봉	전자 호루라기	신 호 위 치
	빨간조끼 (주간)	LED조끼 (야간)	
	안전모 (빨간색)	안전화	
	각반		



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작업허가제 관리

현장내 위험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승인 받은 후 착수(위험요소 사전배제 목적)

위험작업 대상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
- 1.5m 이상 굴착 및 흙막이 가시설 작업
- 밀폐공간 질식위험작업(방수공사, 터널)
- 기초파일 작업, 기중기 사용 중량물 이동작업
- 불티를 비산하는 화기작업
- T/C 설치,인상,해체 작업
- 철골구조물 설치,인상,해체
- 승강기 설치공사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의 설치,연장,해체(H:4.2M이상)

작업허가 요청서 작성

작성주체 : 공사팀장

작업허가 : 현장소장 또는 사업관리단장

작성 후 게시

해당 위험작업 장소에 게시(근로자에게 주지)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들에게 교육,공지

작성시기

1일 등 주기적 작성(단, 발주처별 작성지침,양식 준수)

※ 별도 지침 없을 경우 : 양식 선택하여 공사팀 작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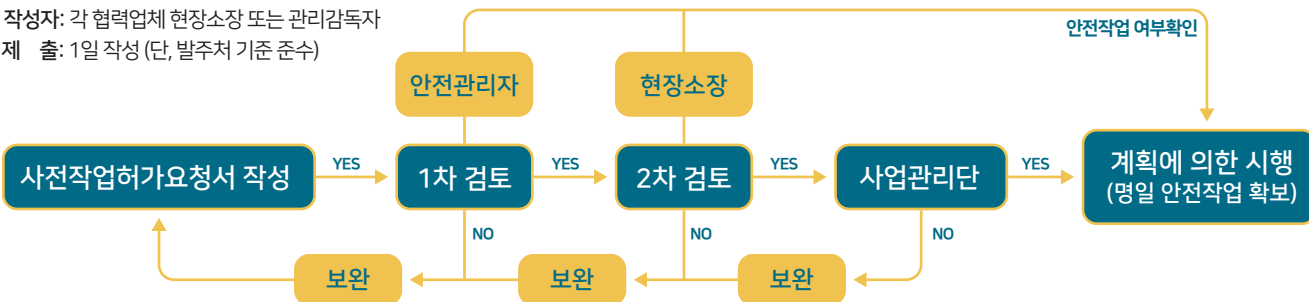
안전신포등 점검시 '작업허가제'도입여부 확인,평가 함

미시행시 '국토부 & 발주처 벌점'사항

순서도(Flow Chart)

작성자: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

제 출: 1일 작성 (단, 발주처 기준 준수)



사전작업허가 요청서

작업허가서(PTW)		공사팀장	현장소장	관리단장
신청자:	작업일: 년 월 일			
공구명:	작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업장소:	작업종류:			
허가작업	작업내용	작업담당	장비 현황	기계기구 현황
			장비명	대수
			기계명	대수
작업인원				
보조구				
작업시 요구사항				
기상 상황 검토				
작업 위험성 평가				
작업내용	위험요인	평가등급	평가등급	위험 제거 대책
		장소	인원	
		장소	인원	
		장소	인원	
추가 코멘트	공사			
	안전			
첨: 1. (서명, 직책), 2. (인장, 직책), 3. (인장, 직책)				

남광토건 작업허가서 양식

사전작업허가 요청서 (Permit to Work)		
1. 작업허가 신청 - 작성인자:		
신청인	일제명	작성일자
		(년)
2. 작업계획		
허가대상 공정	☐ 기초파일 작업 ☐ 흙막이 가시설 작업 ☐ 거푸집동바리	
	☐ 불이(20m 이상) 고소작업 ☐ 20m 이상 지주 조립작업	
	☐ 기중기를 이용한 작업물 취급 ☐ 불티를 비산하는 화기작업	
인원	☐ 밀폐공간 작업(환기) ☐ T/C 설치, 인상, 해체	
	☐ 철골구조물 설치, 인상, 해체 ☐ 부양기 설치작업	
특수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의 설치, 연장, 해체(H: 2.0m 이상)	
위험요인	특수	
조립위치	작업기간	
사용장비		
3. 해당공종 위험성 평가		
공종명	작업내용	위험요인
		위험도
4. 작업 개시여부 결정조건		
공사팀장 (인)	결정구분	
	☐ 승인 ()	
	☐ 조건부 승인 ()	
	☐ 부속함 ()	
현장소장 (인)		

발주처 양식 (국가철도공단)

제 목 :	(승인) 위험공종 안전 작업허가서(PTW)		
허가일자:	0000.00.00		
□ 공 사 명 :			
□ 사 업 비 :			
□ 공사기간 :			
□ 시 공 사 :			
□ 감 리 사 :			
□ 위험공종 작업내용 :			
공종명	공종	작업일제명	공종
허가작업내용	공종	작업위치	공종
작업인원	00주 00인, 00주 00인	작업책임자	0.0 인(직책: 000-0000-0000)
위험요인	개최형태	개선대책	
주요 위험성평가 결과 요약	관련 장비	개선대책 결과 요약	
공종	공종	공종	
□ 검토내용			
※ 공사감독자(관리원)는 결과 시 검토여부 있을 경우 검토결과(승인)를 기재			
검토의견			
공사감독자(관리원)의 작업허가조건 후 검토의견			
붙임 : 1. 해당 공종 위험성평가표, 서면 1부.			
2.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성 확보 자료(조치내용, 서면 등) 1부.			
3. 관계문건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자료(배당작업서) 1부.			
20 . . .			
작성자 : 현장관리인			

발주처 양식 (LH)

작업중지권(Work-Stop)

작업중지권 시행

근로자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작업중지(일시,부분,전면작업중지)를 통해 개선 후 작업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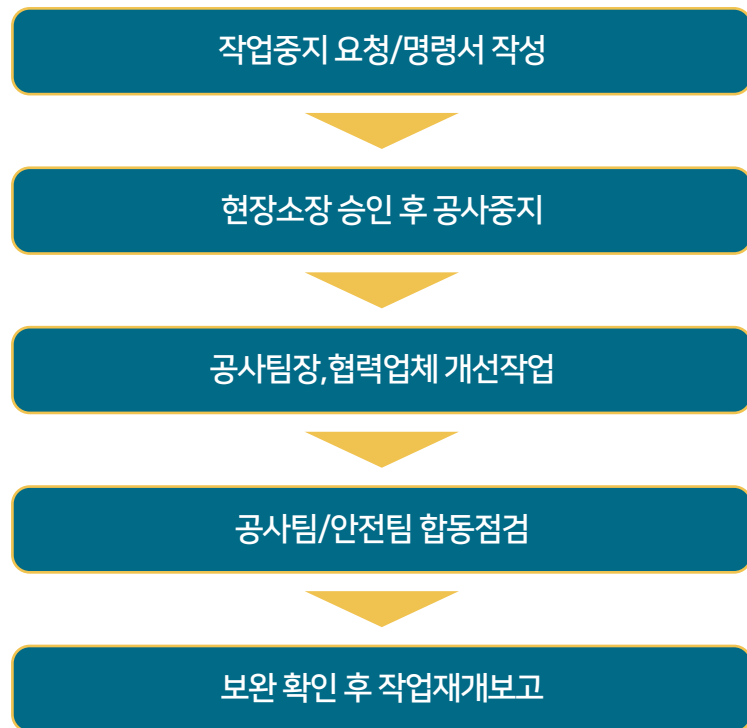
■ 긴급 작업중지 대상

1. 긴급한 화재,폭발 위험예측 될 때
2. 강풍,강우,강설,혹서,혹한 등 자연재해 예측시
3. 작업계획서 미제출 장비작업
4. 안전기준 미준수,불량시
5. 개인보호구 미착용 작업시
6. 안전사고 발생 OR 근로자 요청시
7. 음주작업자 발생시
8. 그 밖에 안전보건관계자 요청시 (사업본부 소속 안전점검반)

■ 작업중지종류

- 일시 작업중지 : 단시간 조치 후 작업
부분 작업중지 : 해당구간 조치 후 작업
전면 작업중지 : 현장 전체 개선 후 작업

■ 현장소장 작업중지 승인



■ 조치확인 및 작업재개

1. 현장소장/안전관리자
위험제거상태/보완사항 확인
작업중지서류 해제근거 첨부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기록관리
2. 공사팀장
작업중지 해제 후 동종사유로 인한 중지사유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
협력업체가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시 원인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개선대책으로 협력업체 등 지속적 관리 필요

기술안전관리

안전전문가 기술안전 컨설팅

- 외부 안전전문가/건설장비전문가 컨설팅 지속시행

안전건설장비전문가 장비안전점검 지속시행으로 중대재해예방

- 건설기계(월대) 3대이상(그 외 장비점검 필요현장) 매월 전문가 점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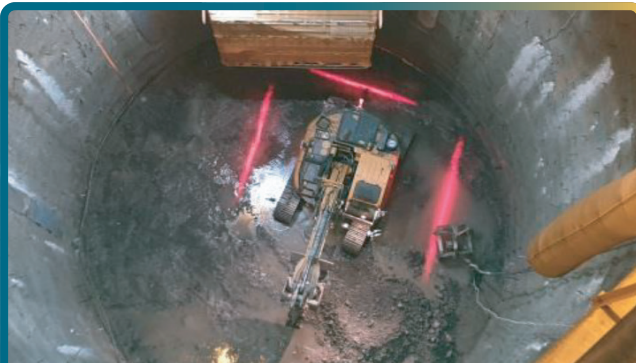
건설기계관리법 대상장비

-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향타 및 향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장비(건설)

-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5) 고소작업대

스마트 산업기술 활용 안전관리 강화



접근방지 LED라인



지능형 CCTV (핸드폰 연동)

현장 시스템안전 (P→D→C→A)

- 지속적인 현장기술안전 교육활용

안전 / 공사팀

안전작업방법 및
법적사항 확인
위험성 평가

협력업체

가시설물 반입 설치 전
사전작업 허가요청서
(공사팀에 제출)

공사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작업방법으로
시공관리

안전팀

정기점검 (주1회) 및
수시점검

안전팀

불안전한 가시설물
사용중지, 경고조치 및
수거조치

안전감시단

운영 목적

- 고위험 작업 상주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순찰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관리
- 건설 장비 반입, 일상점검의 지속적인 관리로 장비사고 예방
- 위험지적 후 조치완료까지 추적관리 강화를 통한 실질적 관리

현장 활동

- 공정별 위험 작업 Point 파악
- 현장 내 장비 관리 및 화재발생요인 제거
- 근로자 작업상태 밀착 관리
- 현장 내 안전 시설물 설치상태 및 관리상태 점검
- 현장 내 불안정한 요소 지적 및 조치/확인
- 현장 정리정돈 상태 점검
- 근로자 수시 안전교육

투입 과정

- 현장 특성 및 위험성에 적합한 인원 투입 → 기존 안전시스템에서의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감시

현장개설

- 위험성 평가
- 안전감시단 투입 계획수립

공사팀

- 계획검토
- 안전감시단 업체선정

현장

- 안전감시단 인원 투입 및 운영
- Feed-Back

근로자 안전개선 참여

안전감시단 안전점검

안전사각지대 "ZERO"

관리감독자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안전점검



안전조회 및 TBM



근로자 안전 통제



건설장비 점검



위험물 안전점검



개인보호구 확인



안전시설물 점검

의사소통

- 근로자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직접 참여하여 안전 사고재해를 수시로 인식하여 예방한다.

자발적 안전문화운동

3·3·3 안전운동

오후 3시 현장 근로자는 작업을 멈추고 본인, 동료의 안전장구 및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시공담당자는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매일 오후 3시



3가지 점검 [나, 동료, 주변]



3가지 행복 [나, 가족, 회사]

4·4·4 예방운동

매월 4일 개인보호구 중점점검 및 특별안전교육, 14일 안전설비 중점점검, 24일 건설장비 중점점검을 작업 전에 시행한다.



매월 14일 [개인보호구 중점점검]



매월 14일 [안전설비 중점점검]



매월 24일 [건설장비 중점점검]

현장 기본 안전수칙 준수

① 안전관리 우수 협력업체 선정 / 자발적 안전관리

- 안전 우수업체 활동을 장려하고, 사전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 안전 우수업체 적극 발굴 및 우수 안전관리수칙 준수자를 선발하여 포상

②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 각 공종별 안전점검 CHECK-LIST 점검 후 이상 사항은 위험성평가 협의회시 소통

③ 맞춤형 안전컨설팅 시행으로 안전관리 수준향상

- 외부 자율안전 및 건설장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속 시행

④ 전담신호수, 화재감시자 숙련공 배치

- 작업 지킴이 및 굴삭기 등 상주장비 의사소통이 원활한 숙련자 배치

⑤ 작업허가제 시행

- 현장별 PTW(Permit to Work) 시행
 - 작업 1일전 작성
 - 현장소장 등 책임자 허가 후 작업투입
 - 위험성 평가시행
 - 전 현장 시행토록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내용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는 3년의 적용유예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 :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중대재해의 정의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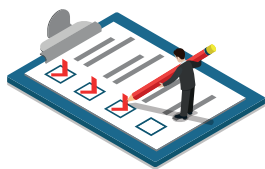
[제2조(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의 주요내용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 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처벌내용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제3조 (적용범위), 부칙 제1조 (시행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남광토건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안전한 현장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